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 ~ 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이면계속〉

[illegible]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356

● 공 고	
제 602 호	판인제교부공고 9
● 구 고 시	
제 2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강남) 9
● 구 공 고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강동) 10
제 78 호	주택건설업자등록탈소 (강서) 12
제 9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용산) 12
제 10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불위한공람공고 (중구) 15
제 107 호	주택건설사업자및대지조성사업자등록탈소 (동대문) 17
제 108 호	주택개발개발전농2구역관리처분변경을위한공람공고 (동대문) 17
제 109 호	전농2구역주택개발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불위한공람공고 (동대문) 17
제 12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공람공고 (관악) 18
제 139 호	관인사용승인공고 (송파) 18
● 사 업 소 고 시	
제 38 호	하천의점용허가 19
제 39 호	하천의점용허가 (기간연장) 19
제 40 호	하천의점용허가 19
● 사 령	

공 문 시 행

서공시10750-1820

1990. 11.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관리전환 소요대상 물품조회

1. 관리전환 소요물품을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 유무를 조회하오니 소요 회
 당부서에서는 90년 12월 10일까지 관리전환 소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내에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 관 리 전 환 소 요 대 상 품 목 -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취 득 일 시	취 득 가 격
5805-006	구내교환기	SENTINEL- 400	조	1	중고	'83. 6	65,343,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산하전기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택
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5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71호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일반재개발사업”을 “주택개발재개
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중 “일반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차관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를 “주택재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특
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장의 제목 “일반재개발사업”을 “주택개
발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중 주택개발재개
발사업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중 본문,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하고, 제8호중 “주택개발재개발
및 불량주택정비사업”을 “주택개발재개발
사업”으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고, 동
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다음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택개발재개발구역내의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의 건설
2. 주택개발재개발사업을 위한 측량
8. 주택개발재개발구역내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 및 매입비
9. 주택개발재개발구역내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을 위한 택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10. 주택개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
공사에 대한 출자

제8조중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중 차관주택재개
발사업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
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72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
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1990년 9월 1일 이전에 이
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1991년 2월 28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2. 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66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하철공채증권은 매입필증을 연결하여
조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공채의 대출일은 대출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로 한다. 단, 실제 대출일로부터
대출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대출시에 선급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앞 쪽)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증권양식

서울특별시

년 호

지 하 철 공 채 증 권

09090000

만 원 발행일 년 월 일

이 증권은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에 의하
여 후면 기재조건으로 발행한다.

서울특별시장

단 호

0000000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증권

매입필증

금 원정 (₩)

매입자성명	
용 도	
정 구 기 관	

위와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조례 제3조에 의거 공채증
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매 출 점:

(뒷 쪽)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증권양식

- 이 채권은 무기명식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다.
- 이 채권의 이율은 연6%로 하며, 상환은 5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 이 채권의 이자는 2항의 이율로 복리로 계산하여 1차원금상환과 동시에 지급하고 2차이후의 이자는 년리로 계산하여 매년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 이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발행일만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 이 채권은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철공채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이 채권은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원리금 상환은 서울시 금고 또는 서울시 소재 한국상업은행 본지점에서 지급한다.

선급이자지급

매출일: 년 월 일

취급부·점장: (기명날인)

원리금 지급		상 환 일		지 급 처
구 분	원리금액			년 월 일
1차	원금	원	년 월 일	
	이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2차	원금	원	년 월 일	
	이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3차	원금	원	년 월 일	
	이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4차	원금	원	년 월 일	
	이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5차	원금	원	년 월 일	
	이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주)

-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경이 있는 것은 무효임
- 이 매입필증은 역하한 경우에도 제발행하지 않음
-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 이 매입필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제1529호

시

표

1990.12.5

21-7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9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변경허가

1. 우리시 관내 서울산업대학, 서울여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노원구청,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 학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4

서울특별시장

○ 서울산업대학

- 가. 사업시행지: 노원구 공릉동 172일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명칭: 서울산업대학시설 증축
라. 사업시행 규모

1) 시행면적: 479,737㎡

2) 사업 내역

· 기 존

- 동수: 42동 - 연 72,840.48㎡

· 급회 허가내역

- 학생회관 증축: 연 1,081㎡

- 도서관 신축: 연 1,806㎡

- 기숙사 신축: 연 2,653㎡

- 교육기자재관리소 신축: 2,201㎡

제 3동 신축, 1동 증축, 연 7,741㎡

· 합 계

- 동수: 46동, 연 80,581.48㎡

가. 사업시행자 주소: 노원구 공릉동 172

성명: 서울산업대학장

바. 사업의 착공연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사업의 준공예정일: '91. 12. 30

아.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자. 토지소유자: 문교부

(수용할 토지 없음). 끝

○ 서울여자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노원구공릉동133-25일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명칭: 서울여자대학교 시설증축
라. 사업시행 규모

1) 시행면적: 141,222㎡

2) 사업 내역

· 기 존

- 동수: 37동, 연 42,954.26㎡

· 급회 허가 내역

- 가스분배설 신축, 연 12㎡

- 라카툼 신축, 연 84㎡

- 화실, 온실, 신축, 연 203.25㎡

· 합 계

- 동수: 40동, 연 43,253.51㎡

마. 사업시행자 주소: 노원구 공릉동126

성명: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장 안경운

바. 사업의 착공연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사업의 준공예정일: '91. 12. 30

아.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자.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정의학원

(수용할 토지 없음). 끝

○ 이화여자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대현동11-1일대

공 고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증축
 라. 사업 시행자
 : 당 초 -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육길
 변 경 -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 끝.

●서울특별시공고제602호

관 인 재 교 부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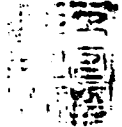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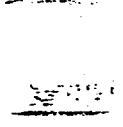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5조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12. 1

서울특별시청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0년 12월 5일

2. 관인재교부 내역

인 영	신 규		폐 기	
				
공인명	종로구청장인 (호적등초본용 : 인중기용)	종로구청장인 (건축물대장용 : 인중기용)	종로구청장인 (호적등초본용 : 인중기용)	종로구청장인 (건축물대장용 : 인중기용)

구 고 시

1990. 11. 30

강 남 구 청 장

●강남구고시제2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77호('71. 8. 24)에 의거 영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인가된 논현동 107-10번지상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논현동 107-10번지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구간 : 논현동 107-10번지
3. 사업시행규모
: 도로개설 B=3-4m, L=155m
4.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1. 12. 31까지
6. 사용할 토지소유자와 소재지, 지적 및 토지수용법 제4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지 번	지목	면적	단위	용 도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강남구 논현동 107-27	도로	14.5	㎡	무 허 가 (주 택)	강남구논현동107 번지한성(아)213호	고광현	'79년 이전
강남구 논현동 107-9	도로	7.7	㎡	무 허 가 (주 택)	강남구 학동129	김정현	'82년 이후

7. 관제도서는 강남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4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354호('90. 10. 24)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되고 강동구 고시제30호('90. 11. 12)로 지적 승인된 천호3동 113의 35-137의 2간 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 '90. 12. 1 - 12. 14

나.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480-1405~7)

1990. 11

강 동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 사 업 명 : 천호3동 113의 35-137의 2간 도로 개설공사
- 사업 시행 구간 : 천호3동 113의 35-137의 2간
- 사업시행 규모 : B=8m, L=210m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랍니다.

토 자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천호동113-35	대지	149	강동구 천호동 387의 47	한 원 복	
" 113-53	"	39	용산구 동빙고동 310-29	박 주 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성명	비고
천호동 113-17	대지	43	강동구 천호동 387-47	한원복	
" 113-48	"	408	성동구 노선동 15	홍형식	
" 113-49	"	53	강동구 천호동 113-5	한문환	
" 113-50	"	12	강동구 천호동 산 37	조윤희	
" 129-6	"	79	강동구 천호동 127	구완서	
" 133-35	도	약 16	강동구 천호동 136	김을식	
" 133-47	"	14	강동구 천호동 133-34	김장보	
" 133-46	"	16	강동구 천호동 133-36	이학범	
" 132-22	"	31	강동구 천호동 132-2	김충현	
" 131-8	"	24	강동구 천호동 131-5	심승목	
" 131-9	"	2	강동구 천호동 222-15	이종숙	
" 131-12	"	3	성남시 신흥1동 4440	이기열	
" 131-10	"	37	강동구 둔촌동 446-10	김기원	
" 137-6	"	73	강동구 천호동 137-8	정광남	
" 137-17	"	24	강동구 자양동 613-37	전찬수	
" 139-8	임야	49	서초구 방배동 8-4	조순환	
" 131-9	"	30	강동구 천호동 139	구종용	
" 139-11	대지	12	강동구 천호동 139-1	김성순	
" 140-7	"	15	강동구 천호동 140-1	임한수	
" 140-8	"	34	강동구 천호동 140-7	심우형	
" 140-9	"	31	강동구 천호동 107	심우선외4인	

지 장 물 조 서

번호	위 치	지장물명	면적(㎡)	소유자
1	강동구 천호동 139-3	건물	56	서초구 방배동 8-4 조순환
2	" 139-2	화장실	5	강동구 성내동 161-152 구본운
3	" 140-1	건물	8	강동구 천호동 140-1 임한수
4	" 131-5	"	6	" 131-5 심승달
		"	4	
5	" 131-1	"	9	강동구 천호동 131-1 구종호
		"	4	
6	" 129-6	"	31	도봉구 미아동 460-113 김영순
		"	6	
7	" 113-46	가건물	42	강동구 천호3동 113-6 홍형식
		"	16	강동구 천호3동 110-70 안창수
8	" 113-5	건물	1	성동구 행당동 300-11 안문환
9	" 133-36	"	6	강동구 천호동 133-36 이학범
		화장실	1	
		장독대	3	
10	" 132-2	화장실	4	강동구 천호동 132-2 김충현

●강서구공고제78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규정에 의거 등록말

소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2. 1

강 서 구 청 장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상 호	소 재 지	등록말소일자	말 소 사유
구등록 88-334	윤인습	태진주택	강서구 염창	'90. 12. 1	자진반납
신등록 88-14-5			282-26		

●용산구공고제94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 시 계 획 공 람 공 고

합니다.

1990. 11. 30

용 산 구 청 장

- 공 람 개 요 -

1. 건설부고시제564호 ('63. 9. 2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후암동 418-32~389-21간 도로 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간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 가. 사업시행지: 용산구 후암동 418-32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후암동 418-32~389-21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개요: 도로확장 B=6-12m, L=150m
- 라.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토지 및 물건조서 생략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생략)
- 아. 공람장소: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 건설관리과 (710-3400)
- 자. 공람기간: '90. 11. 30 ~ '90. 12. 13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전이의 관리의종류및내용
1	후암동 418-23		451.2	451.2			미등기			
2	418-34		40.7	40.7		국 유	재무부			
3	418-48		60.5	60.5		이창희	후암동 418-13			
4	418-47		17.5	17.5		"	"			
5	418-27		122	122		장진수	서울서대문구신화동201-1			
6	418-33		43.3	43.3		"	"			
7	418-10		97.9	97.9		국 유	재무부			
8	415-75		34.2	34.2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교회	후암동 415-5			
9	415-74		204	204		"	후암동 415-5			
10	415-8		133.6	133.6		"	"			
11	404-61		97.5	975.2		국 유	전신부			

입 번 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전등의 관리의종류및내용	
12	후암동 265-32		23	23		강 완 실	중구 향학동1가 202-24				제1529호 시
13	265-25	도	32.1	32.1		국 유	서울시				
14	392-23		25.3	25.3		한 규 철	후암동 265-1				
15	392-22		16.9	16.9		최 계 순	후암동 392-11				
16	265-31		13.5	13.5		전 인 환	후암동 404-24				
17	265-30		17.6	17.6		국 유					제190125호 본
18	265-28		25.3	25.3		한 규 철	후암동 265-1				
19	265-29		15.9	15.9		국 유					
	19건			2,329.6							

●중구공고제10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 위한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331호 ('90. 9.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1호 ('90. 10. 17)로 지적승인된 중구 황학동 1126번지에서 황학동 1424번지호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중고 기간내 공람강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12. 5

중 구 청 장

- 공 랑 요 지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나.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황학동 1435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폭 = 6m, 연장 = 90m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라. 수용할 토지 (건물) 조사

○ 도면 : 생략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황학동	1126-1	대지	25	황학동 1126		석미순	
	1130-1	"	18	황학동 2197		이영선	
	1131-1	"	21	황학동 466-2		신대선	
	1132-1	"	1	황학동 466-2		신대선	
	1133-1	"	1	황학동 466-2		신대선	
	1134-1	"	22	성동구 상왕십리동 468		지대형외5인	
	1135-1	"	16	성동구 상왕십리동 468		지대형외5인	
	1154-1	"	10	황학동 1721		장등순	
	1156-1	"	20	황학동 1156		정양정	
	1424-2	"	42	황학동 284		김광석	
	1432-1	"	14	황학동 1432		조계훈	
	1433-1	"	13	도봉구 공릉동 240-168		홍광석	
	1435-1	"	22	황학동 1435		윤신주	
	1436-1	"	1	황학동 1442		서균석	
	1439-1	"	4	황학동 1439		오병유	
	1440-1	"	5	황학동 1440		박용태	
	1442-1	"	6	황학동 1442		서균석	
	1444-1	"	15	강동구 잠실동22(아)258-502호		원유희	
	1445-1	"	1	광주북구운암동294.운암(아)337-102		오신석	
	1446-1	"	11	신당동 103-6		박규분	

건 물 조 서						
소재지지번	구 조	용 도	수용(㎡)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황학동 1424	목조초층	주택	33	필동1가 3-1	유용식	
" 1433	세면brick조와층	점포	15(1층) 11(2층)	황학동 558-2	조병은	
" 1432	목조와층	주택	9	황학동 1432	공금순	
" 1435	목조세면와층	주택	6	강남구 반포동 2-1 신반포 (아) 17-207	김보권	
" 1435	세면brick조도판층	주택	2	강남구 반포동 2-1 신반포 (아) 17-207	김보권	
" 1440	목조와층	주택	4	황학동 1440	신우현	
" 1439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2	황학동 1439	오병유	
" 1442	목조와층	주택	3	황학동 1376	서균석	
" 1446	목조와층	주택	8	성동구 상왕십리동 561-6	이수석	
" 1444	목조와층및연	주택및	2	황학동 1376	원면식	
" 1444	와조평옥개	점포				
" 1444	목조와층및연	주택및	3	황학동 1376	원명식	
" 1126	와조평옥개	점포				
" 1126	연조및세면	점포	14(1층)	황학동 1126	석미순	
" 1126	벽돌조평옥개	사무실	14(2층) 14(3층)			
" 1126	연조및세면	주택	11	황학동 1126	석미순	
" 1130	벽돌조평옥개					
" 1130	세면brick조	화장실	3	황학동 2197	이영선	
" 1130	평옥개					
" 1130	목조와층	주택	11	황학동 2197	이영선	
" 1131	목조와층	주택	9	성동구 상왕십리동 466-2	신대선	
" 1134	목조와층	공장	8	황학동 1134	저대진외5인	
" 1135	목조와층	주택	6	황학동 1135	저대진외5인	
" 1154	목조와층	여인숙	4	황학동 1721	장경순	
" 1156	목조와층	주택	2	성동구 상왕십리동 478-3	최용락	
" 2473-1	시멘트brick	화장실	1	황학동 1157	황학노인경	

●동대문구공고제107호

주택건설사업자및대지조성사업자등록알소

다음 사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달소 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 시
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11.

동 대 문 구 청 장

발 소 자 명 단

입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발소일자	발소사유	근거법령	비고
1	78-119	제일주택사	황만복	동대문구 신 설동 97-22	90. 11	영업소재 지불분명	주택건설촉 진법제7조	
2	84-641	(주)청원주택	권태용	동대문구청량 리동 750	"	"	"	
4	87-25	(주)동심주택	김진택	동대문구 장 안동 412-4	"	"	"	
5	89-89	(주)강부주택	최중용	동대문구 신 설동 102-4	"	차전달소	"	대지 조성 사업자

●동대문구공고제108호

주택개량재개발전농2구역관리처분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하고, 서고시 제212호('76.9.5)및 같은고시 제77호('77.3.29)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 전농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재개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이해 관계인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견서는 공람기간내에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11.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고 내 용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다. 공람내용 :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역(환지
예정지 지정서)

●동대문구공고제109호

전농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시고시 제212호('76.9.5)로 사업시행인가된
전농 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재개발법 제15조규정
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동대문구청 주택

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11. 14일 동대문구청장 - 공 고 내 용 - 가. 사업명: 전동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동대문구 전동동 127번지 일대 75필지 다. 시행면적: 7,880.9㎡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공람내용(변경내용)		가. 공람기간: '90. 12. 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과(880-5385) 1990. 12. 14일 관악구청장 - 아 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24의 2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서울직업학교 3. 시행자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4. 사업시행면적: 11,711.7㎡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허가일-'92. 12. 30 6. 수용되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명세-공람장소에 비치한 조서와 같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76.9.5-'90.12.31	'76.9.5-'91.12.31	1년연장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사. 공람장소: 동대문구청 주택과						
◎관악구공고제123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325호('84.6.4)및 서울특별시 고시제356호('84.6.20)로 도시계획사업(학교)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24의 2일대의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항에 의거 14일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계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고제139호 관인사용승인공고 1990. 12. 1자로 잠실제1동장과 삼전동장의 관인개각 사용을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11. 29. 송파구청장 1. 관인명: 잠실제1동장과 삼전동장의 직인 및 제인(민원사무전용) 2. 사용개시일: 1990. 12. 1 3. 개각판인의인명						
구분	신			규		
인	 			 		
영	 			 		
공인명	잠실제1동장의인 및 제인 (민원사무전용)			삼전동장의인 및 제인 (민원사무전용)		

사 업 소 고 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8호
하천의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11. 30.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0. 11. 30	서울송파구 송남동 190 번지 (한강)	하천	322.85㎡	이동식과고라 및 야외무대설치	'90.11.30 - '91.11.19	서울 송파구 송남동190번지	(주)삼세봉 대표 이익룡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9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12. 5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0. 12.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30번지 (한강)	하천	834㎡	유천경 설치	1990.12.1 - 1991. 11. 30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산1-2호	(주)원 광 대표 류복수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0호
하천의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12. 5.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0. 12. 5	서울특별시 성동구성수2가 108-1번지 외 94소(한강)	하천	40㎡	도시고속화도로 설계용시추조사	'90.12.5 - '90.12.14 (10일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45	(주)동일기술공사 대표 황해근

사 령

◎ 1990년 12월 5일자

7급이하 공무원 전출

령 제41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동근	행정주사보에 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윤찬	"	은평구	"
이범훈	행정서기에 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안양하수 처리장	지방행정서기
김태백	"	종로구	"
김충년	"	"	"
정종오	"	중구	"
이건주	"	"	"
정해오	"	동내문구	"
이상택	"	도봉구	"
신장식	"	성동구	"
김명수	"	은평구	"
김지근	"	"	"
권희승	"	서대문구	"
노경섭	"	"	"
박시완	"	"	"
조훈	"	영등포구	"
고광모	"	서초구	"
장민형	행정서기보에 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노원구	지방행정서기보

◎ 1990년 12월 4일자

기능직 공무원 면직

령 제41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승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통신원 (기능직 8등급)

◎ 1990년 11월 30일자		9급 공무원 전출		령 제414호	
성명	발령	사	광	현	부서
김정옥	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기보
	경찰병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사령					
◎ 1990년 12월 1일자		5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148호	
연번	성명	발령	사	항	현부서
1	심재영	강동수도 사업소	공무과장		강동수도
					공무과장
					지방수도
					사업소
					직무대리
					토목과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